

2026년도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 주요 개선 사항

구분	2025년	2026년	변경사유
지원단지 선정방식 개선	○ 도농복합지역 및 도시 지역 구분 없이 대규모 or 소규모 단지로 구분하여 신청 및 선정	○ 도농복합지역(15개 시·군)과 도시지역 (16개 시·군)으로 구분하고, 도농복합지역은 대규모 or 소규모 단지로 구분하여 신청 및 선정	○ 지원단지 선정 시 도농복합지역 과 도시지역 으로 구분하여 도농복합지역과 도시지역의 균형지원

**26년도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 시행지침**



경 기 도
[친환경농업과]

- 본 지침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기관(시·군)이 법령과 사업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본 지침과 상관없이 해당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업수행 중 해당 법령 개정 시에는 지침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법령이 우선 적용됨

목 차

1. 사업개요	1
2. 사업내용	2
3. 사업시행 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	3
4. 사후관리	6
5. 주의사항	7
6. 관련서식(서식 1~7)	9
7. 평가기준(참고 1)	19

2026년도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식량산업팀)	식량산업팀장 이용현 담당주무관 전소현	031-8008-5461 031-8008-5463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미 생산에 대한 농업인의 의욕 고취를 통해 고품질화 및 명성 유지
- 소멸 위기의 농업·농촌을 지키며,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

□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지원)
-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2조(지원사업)

□ 주요내용

- 사업량 : 농업기계 11대(이앙기 7, 콤바인 4) * 미정
- 사업비 : 475백만원(도비 100%)
- 사업대상 : 경기미를 생산하는 우수 11개 시·군(우수단지)
- 지원한도 : 이앙기 25백만원/1대, 콤바인 75백만원/1대
- 사업내용 : 경기미 생산 우수단지에 농업기계 지원

□ 배정계획

- 배 정 량 : 도농복합지역* 시·군 7 ~ 9대 / 도시지역** 시·군 2 ~ 4대
- 시군배정 : 규모·기종별 시·군 신청에 따른 경기도의 평가 선정
- 단지배정 : 경기도의 시·군 배정 이후 시군이 자체 계획에 따라 선정
- * (도농복합지역) 용인시, 남양주시, 평택시, 화성시, 파주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 ** (도시지역)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의왕시, 과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동두천시

Ⅱ

사업내용

□ 기본방향 (지역별 경기미 생산 농가의 사기 진작 활성화)

- 경기미 생산 규모 및 소멸 위기의 농업·농촌의 유지 등을 감안, 다년간 지원된 시·군과 이전에 지원된 단지는 지원 사양
- 지원하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경작 면적, 참여농가, 집단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단지) 지원
- 도내 경기미의 안정적 생산활성화를 위해 도농복합지역과 도시지역의 구분 지원
- 도농복합지역은 규모화된 단지에 우선 지원했던 방식에 따라 대규모 단지 위주로 지원하되, 농업·농촌에 정착해 왔던 자연부락 등 소규모 단지(농가)의 사기 저하 회복을 위한 소규모 단지도 지원

□ 지원 지역 구분

<도농복합지역> (대규모 경기미 생산단지 / 소규모 경기미 생산단지)

- (대규모 단지) 경기미 생산 농가가 30농가 이상(농업기계 공동이용 기준)인 집단화율이 높은 50ha 이상의 경기미 생산단지
- (소규모 단지) 경기미 생산 농가가 30농가 내외(농업기계 공동이용 기준)인 50ha 미만의 경기미 생산단지(가급적 집단화된 자연부락)

<도시지역>

- 경기미 생산 농가가 15농가 내외(농업기계 공동이용 기준)인 10ha 내외의 경기미 생산단지

Ⅲ 사업시행 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

□ 사업신청 (시·군 → 도) ----- ‘26. 3. 24. 까지

- (신청시군) 시·군에서는 단지 요건을 확인하여 대규모 또는 소규모 단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필요 농업기계를 신청(서식 1)
- ※ 그간 지원되지 않은 단지(마을)로 2곳 내외를 신청하며, 본 단지는 시·군 자격요건 확인을 위하여 제출(최종 단지 선정은 도에서 시·군 선정 후에 추진)

□ 시군선정 (도 → 시·군)

- (시군배정) 신청 시·군을 대상으로 도에서 ‘경기미 생산 우수시군 평가기준(참고1)’에 따라 시·군 선정 및 배정--- ‘26. 3. 27.까지
- 단지선정 : 선정된 시·군은 ‘시·군 자체 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단지)를 선정 ----- ‘26. 4. 16.까지
- 단지(마을)에서는 공동이용에 필요한 농업기계가 부재 또는 노후로 구입이 필요할 경우 ‘시군 지원 계획’에 따라 해당 시·군에 신청(서식2)
- ※ 공동사용이 불가능(면밀검토)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단지(마을)는 지원 불가

□ 보조금 신청·교부

- 시·군은 사업대상 단지를 확정하여 도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식3)(사군→도)
- 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자금 교부(도→사군)

□ 농기계 구입 및 관리 (단지, 시·군)

- (기계구입)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단지(마을)는 시장·군수가 부여한 조건 및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배정된 농업기계를 구입(서식 4~5)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해당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구입 가능
- (구입관리) 배정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단지(마을)가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구매대행 등 지원 및 관리(서식 6~7)
 - 보조사업자의 직접 구입이 어려울 경우 시·군에서 구매대행 등 가능
 - ※ 「지방계약법」 및 「지방보조금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부조건으로 명시 등

□ 보조금 지급 (시·군 → 단지)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농기계를 구입 여부 확인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서식 4~7)
- * 실적보고, 자금교부신청, 정산신청 등 / 보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 정산실시 (시·군 → 경기도) ----- ‘27. 1월 하순까지

- (우수단지) 농업기계 구입실적, 지원보조금 정산자료를 시군에 제출
- (수행시군) 농업기계 구입실적 확인 및 우수단지 정산실시 완료 이후 경기도에 실적 및 정산 보고
- (경기도) 정산실시(지원 보조금 확정), 집행잔액 등 반환 고지

□ 사업 추진 절차

업무 흐름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신청 (시·군 → 도)	3월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구분(도농복합지역, 도시지역), 단지 규모(소규모, 대규모), 필요 농기계(이앙기, 콤바인) 선택하여 도에 사업신청
시군 선정 (도)	3월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에서는 사업 신청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미 우수단지 지원」 시·군 선정 - 선정된 시군에서는 농기계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추경 등 예산편성 추진
단지 선정 (시·군)	4월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된 시·군은 자체적으로 우수단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단지 선정 단지(마을)에서 공동이용에 필요한 농업 기계를 해당 시군에 신청
보조금 지급 신청 (시·군 → 도)	4월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선정된 단지, 구입 기계 등 명시
보조금 교부 (도 → 시·군)	4월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교부확정 및 교부(도)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마을에 선정결과 통보(시군)
기계 구입 (단지, 시·군)	4~11월	시·군 단지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입한 농기계를 확인하고 자금교부 및 정산실시 - 교부 시 「지방계약법」 및 「지방보조금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부조건으로 명시 등
보조금 지급 및 정산	12월	시·군 단지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지급 정산결과 보고(익년 1월까지)

IV

사후관리

- **공동이용** (지원된 농업기계를 공동이용 추진)
 - (우수단지) 지원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공동이용 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매년 공동이용 실적을 시장·군수에게 제출
 - (수행시군) 사후관리기간 동안 우수단지로부터 농업기계 공동이용 실적 등을 제출받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 이후에도 우수단지에서 농업기계가 공동이용 될 수 있도록 노력

- **사후관리** (보조사업 목적 달성 및 「지방보조금법」을 준수토록 관리)
 - (사후관리기간) 5년(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 사후관리 주체는 시장·군수이며, 시·군에서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공동이용, 농업기계 보유 등 관리)를 실시
 - ※ 지원 농업기계 관리카드의 작성·보관, 공동이용 점검확인 관리대장 작성·보관
 -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지원된 농업기계를 처분, 양도, 교환, 임대, 담보 제공, 용도 변경(지방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 등 불가
 - 지방보조금 교부목적 등을 위반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환수 등 조치

- **기타관리** (지원된 농업기계를 공동이용 추진)
 - 지원받은 농업기계은 지정된 보관장소에 항시 청결하게 보관·관리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부착위치 : 지원된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 규 격 : 부착 위치 및 농업기계에 따라 적절한 크지로 제작
 - 재 질 : 테프론스티커, 아크릴, 동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스티커 금지)

(보조금 지원 표지판 예시)

경기미 우수단지 지원 농업기계

이 농기계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입니다.

- 사업 명 : 2026년 경기미 우수단지 농업기계 공급사업
- 사후관리기간 : 2026년 5월 ~ 2031년 5월

- 사후관리기간 내에는 처분, 양도, 담보제공 등이 금지됨 -

년 월 일

경기도지사 · ○○시장·군수



시·군 브랜드 등

V

주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환급 신청 이전이라도 예상되는 환급액 중 투입 보조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사전 공제를 원칙으로 하고, 정산 이후 추가 발생하는 환급액은 시군 세외수입으로 계상(또는 세입세출 외현금으로 입금) 이후 경기도에 반납
- 농업·농촌의 전통문화 계승 등을 위해 모내기 및 벼베기 행사 추진에 노력 (시장·군수와 우수단지가 주관하여 행사 개최)
 - ※ 사업 수행 시군(지원단지) 중 1개소의 시장·군수 주관 모내기·벼베기 전통 문화 행사에 경기도 참여 예정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 등

※ 본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농업기계는 증여금품 또는 기부금품이 아니므로 증여 또는 기부 등의 표시·표현 금지

□ 모내기 혹은 벼베기 적정 시기까지 농업기계 지원 우수단지 선정·공급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일정 기간 내에 지원 단지에 대한 선정 및 농업기계 공급이 없는 경우 경기도가 기 선정된 사업 대상 시군을 취소할 수 있음

□ 단지(마을) 선정은 이전에 지원했던 단지(마을)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군 실정에 따라 이전에 지원했던 단지(마을)도 선정이 가능함. 단, 부조리 발생 등의 방지를 위해 동일한 농업기계(이앙기 또는 콤바인)를 10년 이내 지원하는 것은 불가

□ 경기미 재배면적이 미미한 시군은 재배면적 및 참여농가, 지원대수, 집단화도, 공동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배제할 수 있으며, 시·군간 형평성을 위해 다년간 지원된 시·군은 지원 지양

서식 1. 경기미 우수단지 농업기계 공급사업 지원신청서(시군용)

서식 2. 경기미 우수단지 농업기계 공급사업 지원신청서(단지용)

서식 3. 경기미 우수단지 농업기계 보조금 지급신청서(단지용)

서식 4. 경기미 우수단지 농업기계 공동사용 서약서(단지용)

서식 5. 경기미 우수단지 농업기계 관리카드(시군·단지용)

서식 6. 경기미 우수단지 농업기계 공동사용 관리대장(시군·단지용)

< 서식 2 ~ 6은 시·군 실정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 가능 >

2026년 경기미 우수단지 농업기계 공급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기관장	00시장(군수)		담당부서	○○○○과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31-0000-0000			
신청내용	지역구분	도농복합지역 or 도시지역(택 1)		단지규모	대규모or소규모 (택 1)			
	신청기종	콤바인or이앙기(택 1)						
	예상사업비	계		도비		기타		
		백만원		25백만원 or 75백만원		백만원 (출처 :)		
	평가항목 자체조사 결과							
	경기미 재배면적 (2025년)	경기미 생산단수 (2025년)	전략작물 재배면적 (2025년/ 하계작물)	친환경벼 재배면적 (2025년)	농정예산 차지비율 (2026년)	문화행사 추진실적 (25-26년)	이전지원 수혜실적 (21-25년)	이외실적 (2025년) 道가작성
	ha	kg	ha	ha	%	건	대	시군종합평가 시군농정평가 경기농정기여

위와 같이 2026년 경기미 우수단지 농업기계 공급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00시장(군수)

경기도지사 귀하

<제출 서류>

1. 2026년도 시군 농정해양수산 예산비중이 표시된 예산서(본예산 기준) 1부.
2. 농업·농촌의 전통문화 계승 행사 시군 추진 일건문서 1부.
3. 그 외 부분은 경기도가 파악한 자료와 상이 할 경우 추가 요구

2026년 경기미 우수단지 농업기계 지원필요 단지조사 현황

농업기계 수요단지	아래 0개소 단지(마을) 외 00개(다수의) 단지가 00시군에 존재	
단 지 명 (마을이름)	풍차들녘 or 바다마을	위성사진 (행정구역 및 단지·들녘 등 경계표시) <꼭 1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
마을현황	면적, 인구 등	
경작현황	000ha(논 , 밭)	
경 기 미 재배농가	0000농가	
경 기 미 재배면적	00000ha	
대표지번 (벼재배지)	000읍 000리 000번지	
단지특성	공익적 가치 수행 등	
단 지 명 (마을이름)	풍차단지 or 바다마을	위성사진 (행정구역 및 단지·들녘 등 경계표시) <꼭 1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
마을현황	면적, 인구 등	
경작현황	000ha(논 , 밭)	
경 기 미 재배농가	0000농가	
경 기 미 재배면적	00000ha	
대표지번 (벼재배지)	000읍 000리 000번지	
단지특성	공익적 가치 수행 등	

- 작성방법 :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단지(마을)로 2곳 이상을 임의로 작성하되, 신청한 단지(대 또는 소) 규모에 맞추어 작성
- ※ 작성된 본 단지는 해당 시군에 지원할 곳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경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단지(마을) 선정은 시군에서 경기도 배정 이후 모집·평가·선정 등을 통해 결정(불필요한 민원발생 행위금지)

2026년 경기미 우수단지 농업계 보조금 교부신청서(00시군)

- 1. 보조사업명 : 2026년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사업
- 2. 교부신청자 :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 사업내용 : 지원내용 작성

- 4. 사업기간 :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도 비	시군비	자 부 담

6. 보조금 신청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도비보조				비고
	예산액	기교부	금 회 신청액	잔액	
계	0	0	25,000	0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00시장·군수

경기도지사 귀하

2026년 경기미 우수단지 농업기계 지원보조금 지급신청서

기종명	제조사 규격(형식)	수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i>이앙기 or 콤바인</i>							

2026년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 기계를 구입하고 지원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단지(마을)명 :
 주 소 :
 대표신청자 : (인)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시장·군수 귀하

※ 제출서류 : 세금계산서, 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 별도 첨부

경기미 우수단지 지원 농업기계 관리카드

농기계명		제 조 사 (규 격)		공급년월일
단 지 명	(참여농가수)				
소 재 지					
단지대표자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전담관리자	주소			관리자성명 (전화번호)	
보 관 장 소			관리공무원		

« 구입 농업기계 사진 » *예시*



< 전면 >
< 측면 >
<보조금지원 표지>
<농기계형식 표지>

«년도별 운영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파종실적(ha)						
파종실적(ha)						
수확실적(ha)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업기계	'00.0.0. (농업기계 구입일)	'00.0.0. (5년간)	농업기계를 지원받은 는 5년간 타인에게 해당 농업기계를 양도하거나 판매 등을할 수 없음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참고1

2026년 경기미 생산 우수시군 평가기준(안)

□ 배정계획 : 지역별(도농복합지역/도시지역), 농업기계(이앙기 or 콤바인)별 지원 시군 선정

* 도농복합지역은 단지규모(대규모 or 소규모)별 지원 시군 선정

□ 배 정 량 : (도농복합지역) 7대 ~ 9대 시·군(대규모 4~6 / 소규모 2~4)

(도시지역) 2대 ~ 4대 시·군

* 단지별 지원 대 수는 시·군 신청 내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고품질 경기미 생산 (20점) - 재배면적: 면적이 많은 순	시군 재배 면적 (통계청 발표 기준)	20	전년도 재배면적 상위 10위 이내
		13	전년도 재배면적 상위 11위~20위
		6	전년도 재배면적 상위 21위 이후
2. 벼 재배면적 조정 (20점) - 논타작물: 면적이 많은 순 - 친환경벼: 면적이 많은 순	논 타작물 전환 (농식품부 실적 기준)	10	전년도 재배면적 상위 10위 이내
		7	전년도 재배면적 상위 11위~20위
		4	전년도 재배면적 상위 21위 이후
	친환경 벼 재배 (농관원 실적 기준)	10	전년도 재배면적 상위 10위 이내
		7	전년도 재배면적 상위 11위~20위
		4	전년도 재배면적 상위 21위 이후
3. 공익적 기능 증진 (30점) - 농정예산: 비중이 높은 순 - 전통문화: 건수가 많은 순 - 지원실적: 대수가 적은 순	농정 예산 확보 (시군 본예산 기준)	10	금년도 농정예산 비중 상위 10위 이내
		7	금년도 농정예산 비중 상위 11위~20위
		4	금년도 농정예산 비중 상위 21위 이후
	전통 문화 계승 (시군 행사 실적 기준)	10	전·금년도 행사추진 건수 상위 10위 이내
		7	전·금년도 행사추진 건수 상위 11위~20위
		4	전·금년도 행사추진 건수 상위 21위 이후
	이전 지원 실적 (경기도 지원 기준)	10	5개년간 지원대수 적은 상위 10위 이내
		7	5개년간 지원대수 적은 상위 11위~20위
		4	5개년간 지원대수 적은 상위 21위 이후
4. 각종 경기 농정 평가 (30점) -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순 - 농정평가: 순위가 높은 순 - 농정기여: 기여가 높은 순	시군 종합 평가 (경기도 평가 기준)	5	전년도 시군종합평가 상위 10위 이내
		3	전년도 시군종합평가 상위 11위~20위
		1	전년도 시군종합평가 상위 21위 이후
	시군 농정 평가 (경기도 평가 기준)	5	전년도 농정업무평가 상위 10위 이내
		3	전년도 농정업무평가 상위 11위~20위
		1	전년도 농정업무평가 상위 21위 이후
	경기 농정 기여 (경기도 평가 기준)	20	전년도 경기농정기여 상위 10위 이내
		13	전년도 경기농정기여 상위 11위~20위
		6	전년도 경기농정기여 상위 21위 이후
가점		5	최근 10년('16~'25)간 미지원 시·군
총 점		105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부여 방식 >>

- (최고점수) 상위 10위 이내 : 20점 or 10점 or 5점
- (중간점수) 상위 11위~20위 : 13점 or 7점 or 3점
- (최하점수) 상위 21위 이후 : 6점 or 4점 or 1점

평가 항목별 순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상위 순위(점수) 부여

□ 고품질 경기미 생산(20점)

- 시군 재배 면적(20점) :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재배면적 기준

□ 벼 재배면적 조정(20점)

- 논 타작물 전환(10점) : 농식품부 전년도 전략작물 추진실적 기준
 - 시군 추진 실적(면적) / 경기도 추진 실적(면적)
- 친환경 벼 재배(10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년도 인증실적 기준
 - 시군 추진 실적(면적) / 경기도 추진 실적(면적)

□ 공익적 기능 증진(30점)

- 시군 농정 예산(10점) : 시군 금년도 본예산(농정해양수산) 일반회계 기준
 - 시군 본예산 편성 예산서로 확인
- 전통 문화 계승(10점) : 시군 전년도 및 금년도 모내기·벼베기 행사추진 실적 기준
 - 시군 행사추진 공문서(결재문서)로 확인 / 모내기, 벼베기 실적을 각각 건수로 적용(4건/2년간)
- 이전 지원 실적(10점) : 경기도가 본 사업으로 지원(이양기, 콤바인, 파종기)한 대수 기준

□ 각종 경기 농정 평가(30점)

- 시군 종합 평가(5점) : 경기도 평가 결과 기준
 - I, II, III 그룹 및 등급 점수를 적용하지 않고, 시군 종합 평가 지표* 실적 순위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
 - * 시군 종합 평가 지표 : 지역먹거리, 기본형공익직불, 벼 재배면적 감축, GAP 인증 농가, 농지대장 정비
- 시군 농정 평가(5점) : 경기도 농정평가 결과 기준
 - [1그룹]과 [2그룹]으로 각각 평가한 시·군 순위를 적용
- 농정 기여 평가(20점) : 경기도 평가 결과 기준
 - 금년도 정책협조, 경기도 행사 참여가능 여부, 그 밖의 업무협조 등을 고려

□ 가점(5점) :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간 미지원 시·군은 가점 5점 부여

<< 배정 시·군 결정 방식 >>

- (1차 선정) 시·군 신청에 따른 도농복합지역 및 도시지역 각각 평가하여 도농복합지역은 7개~9개 시·군을, 도시지역은 2개~4개 시·군을 각각 결정[총 11개 시·군 선정]
- (2차 선정) 1차 선정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한 농업기계를 시·군 순위에 따라 배정
- (최종결정) 단지 규모별 신청한 농업기계 기종이 없거나 편중된 경우, 이미 배정된 시·군을 제외하고, 기종 변경 의사를 확인, 단지 규모별로 신청한 시·군 순위에 따라 배정